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박종갑 의원외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5년 12월 8 일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9 일

3. 제정이유

-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
-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공공기관 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,
-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,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및 시·군, 사업자,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(안 제1조)

- 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, 시·군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시·군 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, 사업자는 도와 시·군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한다.(안 제4조 내지 제6조)
-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(안 제8조)
- 에너지계획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 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근거를 규정하고 전문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『에너지위원회』 구성·운영 (안 제10조 내지 제15조)
- 에너지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『시·군 및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』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16조 및 내지 제20조)

5. 검토의견

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국제에너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전체 에너지의 97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다만,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 할 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